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

청주시에서는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비용 부담 경감하고자 「신혼부부 주택자금(전세자금,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2.

청 주 시 장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 (신청기간) [2026. 7. 1.\(수\) 09:00 ~ 2026. 7. 31.\(금\) 18:00](#)
- ☐ (선정인원) 500가구(예산범위 내 선정)
- ☐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
⇒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자녀 있을 시 110만원
- ☐ (지급일자) 2026. 8. 25.(화)
- ☐ (신청방법) 방문접수만 가능
 - 접수장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14 문화제조창 2층, 공용미팅룸2 A구역
 - 방문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선정방법) 우선순위(붙임 1 배점기준표)에 따라 산정

2 사업세부내용

- ☐ 지원대상
 - 기본요건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2019.7.1.~) 혼인신고한 부부
 - 거주요건 : 부부 모두 2025. 7. 1. 이전부터 청주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대출요건** : 제1·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자금(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 **담보물건** : 대출 담보물건이 주민등록상 주소 주택
 - **대출자**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 **대출금액**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 **대출용도** :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어야 함
 - ※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신용대출, 일반대출 등의 경우 신청불가**
 - ※ 주택구입, 내집마련 주택자금 등 주택구입과 관련된 대출상품인 경우에는 거래 내역확인서에 대출용도가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 가능함
 - ※ 중도금 대출 및 집단대출(입주 전 단계의 대출)은 실거주 목적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주택신축, 리모델링 자금 대출, 월임대료가 있는 월세 또는 반전세는 지원 불가**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의거해 산정
 - 주택인정 범위 :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전세자금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월 임대료 없는 곳에 한함)
 - 매입자금 : **매매금 5억원 이하** 주택(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 기준)
- **주택보유 수**
 - (공통)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 배우자·자녀명의 주택도 가구원 주택 보유수에 합산
 - ※ 구입자금 대출자의 경우 분양권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단, 전세자금 대출자의 경우 가구원 합산 분양권 1개 소유는 무주택으로 간주
 - ※ **소유 이력**으로 보유 수 책정되므로 혼인신고일 이후 기존 주택 매각 후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 주택 보유 및 임차한 경우 **지원 불가**

○ **소득기준**(귀속연도 2025년)

무자녀	1자녀	2자녀 이상	비고
8,0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9,8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세전)

- ※ 신청일 기준 20주 이상 태아도 자녀에 포함
- ※ 근로소득의 경우 20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상 **지급받는 총액(세전) 기준**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 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만원미만 절사)

※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 있을 시 연 11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최대 5회 지원, 기 선정(지원)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해야 함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에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횟수 합산

○ 지급일 : 8월 25일(화)

○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입금

2026 지원 금액 산출 예시

①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이 1억원이고, 대출기간이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일 경우
⇒ $100,000,000\text{원} \times 1.2\% \times \frac{12\text{개월}}{12\text{개월}} = 1,200,000\text{원}$  지원금액 : 1,000,000원(최대한도)
↳ 2026년도 총 납부개월(12) 1,100,000원(자녀 유)

②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이 5천만원이고, 대출기간이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일 경우
⇒ $50,000,000\text{원} \times 1.2\% \times \frac{9\text{개월}}{12\text{개월}} = 450,000\text{원}$  지원금액 : 450,000원
↳ 2026년도 총 납부개월(9)

③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이 1억원이고, 대출기간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9월, 임대 계약기간은 2026년 8월까지인 경우
⇒ $100,000,000\text{원} \times 1.2\% \times \frac{8\text{개월}}{12\text{개월}} = 800,000\text{원}$  지원금액 : 800,000원
↳ 2026년도 임대계약기간 중 총 납부개월(8)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④ 주택자금 대출 2억받았을 경우 1년 납입이자(10년만기, 대출금리 3%) : 연600만원
→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 50만원(기 지원)
→ 신혼부부 대출이자 신청 (대출잔액의 1.2% 지원) : 차액분 50만원

□ 지원제외대상

○ 임대인이 임차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 금융권 담보대출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건축물 대장상 불법(위반)건축물로 표기 또는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

○ 무허가 또는 미등기 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다른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단, 청주시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차액분 지급
- 주택 소유 세대이면서 전세 거주하는 자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인 자
-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대출대상 주택이 건축물 대장(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

3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 신청인 : 신혼부부 중 1인 (대리신청 가능)
 - ※ 본인(혹은 배우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제출
- 신청기간 : **2026. 7. 1.(수) 09:00 ~ 2026. 7. 31.(금) 18:00**
- 신청방법 :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만 가능(우편 팩스 접수 불가)
 - 방문시간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 장 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14, 문화제조창 2층, 공용미팅룸2 A구역
- 선정기준 : 신청자 경합 시, 순위 결정 배점표(붙임 1)에 따라 선정
- 문의처 :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043-201-1763)
- 제출서류 : 아래 [5. 제출서류] 참고

4 기타 유의사항

- 허위 및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 조치
- 소득기준, 지원금액 등 사업 세부 내용은 매년 공고 시 변동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심사를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재 사항 착오, 누락,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구분	매입자금 대출자	전세자금 대출자
① ~ ⑥ 공통	① [서식1] 신청서 1부 및 [서식2] 개인정보열람 및 제공동의서·서약서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③ 대출명의자 통장 사본 1부 ④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상품명, 대출기간, 대출이율, 대출용도, 담보 표시, 금융기관 발급) ⑤ 이자상환내역서 (2026년 이자납입내역 및 금액 표시, 금융기관 발급) ⑥ 혼인관계증명서 (대출명의자 기준, 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⑦ 소득 서류	※ 대출명의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2025년 귀속분) (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소득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국세청 발급분) ※ '소득없음사실증명원' 제출 불가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제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 증빙서류, 사업자 증빙서류 모두 제출	
⑧ 주택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필수)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⑨ 주택 소유 확인 서류	1주택 소유 증빙서류	무주택자 증빙서류
	과세년도 : 혼인신고년도~2026년 현재	
	〈대출명의자(소유자) 발급〉 1.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내역 → 청주시 재산세(주택) / 취득세(부동산) 2.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미과세내역 → 전국 재산세(주택) / 취득세(부동산), 청주시 제외	〈대출명의자, 배우자, 자녀 모두 발급〉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미과세내역 → 전국 재산세(주택) / 취득세(부동산)
	〈배우자, 자녀 모두 발급〉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미과세내역 → 전국 재산세(주택) / 취득세(부동산)	
⑩ 선택 서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세무과 방문 발급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발급 시 제외범위 설정 불가하므로 방문 발급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상에 나오지 않는 자녀 확인 시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 20주 이상 임신 중인 신혼부부 • 위임장 : 신혼부부 외 대리 신청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상 주택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① 주민등록표초본 (부부 모두 , 최근 5년 주소 이력,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② 주민등록표등본 (대출명 기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알자 세대주관계 모두 공개)
필요 시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붙임 1>

신혼부부 주택(전세·매입)자금 대출이자 순위결정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자녀의 수 - 동일 주민등록상 자녀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5점 3점 1점
② 부부합산 소득금액	가. 3천만원 미만 나.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다.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라. 5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마. 6천만원 이상		5점 4점 3점 2점 1점
③ 신청월 기준 청주시 연속 거주 기간 - 부부 중 더 긴 기간으로 산정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1년 이상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④ 해당주택 전용면적 - 소수점 절사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	4점 3점 2점 1점
	가. 50㎡이하 나. 51㎡이상~60㎡이하 다. 61㎡이상~75㎡이하 라. 85㎡이하	가. 65㎡이하 나. 66㎡이상~75㎡이하 다. 76㎡이상~90㎡이하 라. 100㎡이하	
⑤ 신청월 기준 혼인기간	가. 1년 미만 나. 1년 이상 3년 미만 다. 3년 이상 5년 미만 라. 5년 이상 7년 미만		4점 3점 2점 1점
총 점			
1. 7월1일 ~ 7월31일까지의 접수분을 심사, 선정 및 지급하고, 신청자 경합 시, 순위결정 배점표 적용 2.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3.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만약 합산한 점수 및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점일 시, 부부합산 소득이 적은 순으로 선정			

<붙임 2>

2026년 신혼부부 주택(전세·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혼인신고일	년	월	일	연락처
신청현황	☐ 1회(최초) ☐ 2회 ☐ 3회 ☐ 4회 ☐ 5회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여부			여() 부()		
소득기준	부부합산소득 (2025년도)	금	원	가족사항 (20주이상 태아 포함)	☐ 무자녀 ☐ 1자녀 ☐ 2자녀 이상
주택현황	주택종류	☐ 전세 ☐ 매입		임대인 (소유자)	
	전세보증금 또는 매매금	금	원	임차면적	m ²
	계약기간(전세)	년 월 일 ~ 년 월 일			
대출정보	총 대출금	금	원	금융기관	
	대출 잔액	금	원	2026년도 이자 개월 (기납부 개월+납부예정 개월)	개월
	대출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원계좌	금융기관			예금주(신청인 명의)	
	계좌번호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구비서류	※ 필수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6. 금융거래확인서 1부 7. 이자상환내역서 1부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구성원 전원) 각 1부 9.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10.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 선택 제출서류 11. 소득기준 상향 적용이 필요한 신청자 추가서류 제출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등본상에 나오지 않는 자녀 확인 시)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20주 이상 임신 중인 신혼부부) 1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대상주택)				

2026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인은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6가지 항목에 대하여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환할 것임을 서약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내 용		신청인 확인란				
1. 혼인관계 확인	본인 및 배우자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관계임	(서명 또는 인)				
2. 청주시 거주기간	2025. 7. 1. 이전부터 청주시에 지속하여 청주시에 거주함	(서명 또는 인)				
3. 주택 소유 여부	전세자금: 세대주, 세대원 전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매입자금: 세대주, 세대원 전체는 청주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음	(서명 또는 인)				
4. 대출용도	본인(또는 배우자)는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 마련용도' 로 대출금을 받아 이자 납부를 하고 있음	(서명 또는 인)				
5. 임차계약 사항	본인(또는 배우자)는 임차(매입)주택이 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실제주택소유자와의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음	(서명 또는 인)				
6. 지원취소 및 환수 (신청자격 박탈)	신청자가 사업에 선정된 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 하는 것에 동의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사 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지원취소 및 환수조치</td> <td style="padding: 5px;"> -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시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td> </tr> </tbody> </table> 자격변경(청주시1년이내 전출시 등) 추후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동의함	구 분	사 유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시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명 또는 인)
구 분	사 유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시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사항, 결혼유무, 주택소유여부, 금융대출자료, 소득상황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처리를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처리를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 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세대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세대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세대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세대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귀하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위임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받는 사람 범위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위임자와 위임받는 자의 가족사항 확인)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인 또는 서명)

청주시장 귀하